

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안내

2020. 5월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1. 제도 개요

도입 목적

-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
-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 조성

법적 근거

-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(공제제도의 확립)

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(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)

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.

2. 제도 연혁

1982. 12

-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설치근거 마련 (중소기업협동조합법)

1984. 6

- 가입 업무 시행

1985. 6

- 도산방지 대출업무 시행 (제1호 대출)

1986. 1

- 어음대출 시행 (제2호 대출)

1990. 4

- 단기운영자금 대출 시행(제3호 대출)

2000. 3

- 가입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

2010. 10

- 가입대상 확대 (1년이상 사업영위 제한 폐지)

2011. 10

- 인터넷 대출 신청 · 접수

2012. 10

-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 대출 시행 (제4호 대출) * 현재 중단

2018. 12

- 재적가입 18,000개사, 기금조성 5,000억원 달성

2020. 5

- 공제기금 모바일앱 출시, 인터넷·모바일 원클릭 대출 시행

3. 제도 특징

주요 기능

-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위한 **공제금 대출***
 - * 공제기금 가입 후 4회차(만3개월)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가능
- 중소기업자의 **공동 구매 및 판매사업자금의 지원**

재원 조성

- 공제계약자의 납부 공제부금
 - 정부 등의 출연금
 - 기금의 운용수익금

대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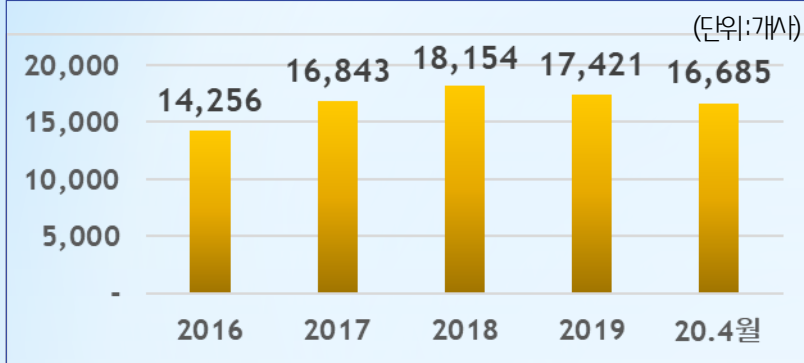
대출종류	대출사유	대출금리	대출기간	대출한도
부도대출채권대출	거래상대방의 매출채권이 부도 등으로 회수 곤란한 경우	무이자 (대손준비금 10%공제)	3년 (6개월 거치, 30개월 분할상환)	납부부금의 1~7배
어음수표대출	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	부금내대출 연3.5% 신용대출 5.0%~8.38%	지급기일 (180일 이내)	납부부금의 1~7배
단기운영자금대출	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	부금내대출 연3.5% 신용대출 5.0%~9.63%	1년	납부부금의 1~3배

*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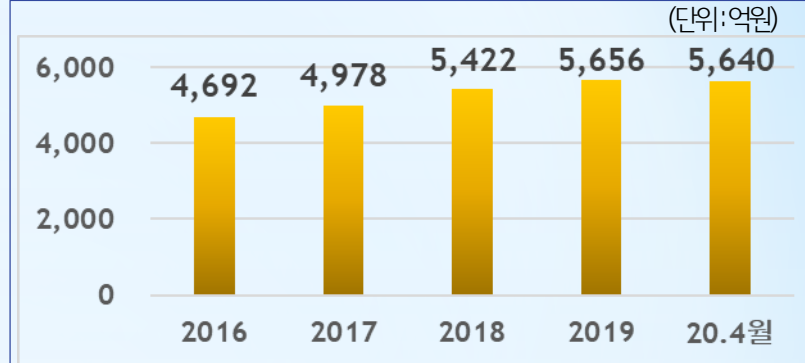
* 전국 17개 시도 및 4개 기초지자체(춘천, 원주, 천안, 고양)와 이자지원 협약을 통해 연 1.0~3.0%p의 이자를 자자체가 지원

4. 가입 및 대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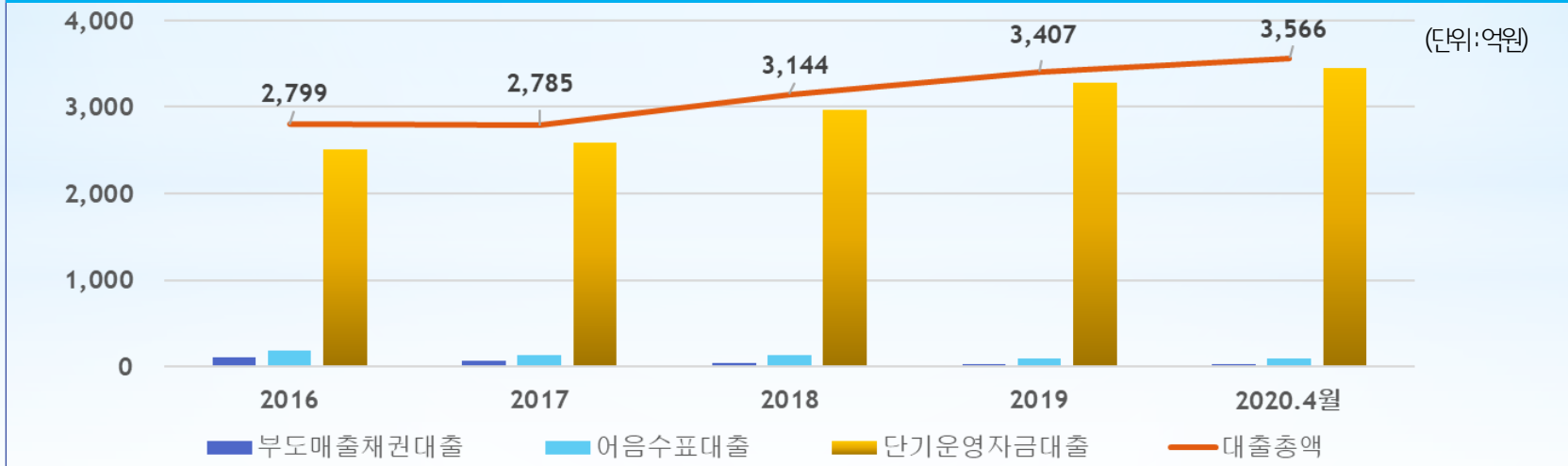
가 입 (재적기준)



기금 조성액



대 출 현 황 (잔액기준)



5. 가입 절차

가입 개요

가입 대상

·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(유형업종 제외)

가입 기간

· 20개월 ~ 60개월(만기 후 유지)

부금 종류

· 월 10만원 ~ 300만원까지(최고 납부한도 1억원)

가입 제한

· 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관리운영업등 사차항택업종

가입 서류

·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

가입 방법

인터넷

· 홈페이지(fund.kbiz.or.kr)를 통한 직접 가입
· 스마트앱(공제사업기금)을 통한 직접 가입

전화

· 공제기금 콜센터(1666-9988) -(교환 2번)가입 상담
· 공제상담사(홈페이지 참조) 가입 상담

방문

·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(공제센터) 방문 가입